

의안번호	제664호
의결 연월일	2024. . . (제 420 회)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발의자	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8월 23일

#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김현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64
----------	-----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23일

발의자 : 김현문, 이상식, 김종필,  
박지현, 이동우, 이상정,  
유재목

##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기반으로 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정책목표, 재정 조달 방안, 사업 활성화 방안 등 포함
-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비용 지원, 교육·훈련,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등 포함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아이돌봄서비스 참여 확산을 위한 홍보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

## 3. 조례안 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붙임
- 협의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조례안 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아이 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5. 전년도 지원계획의 분석 및 평가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
3.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도지사는 법 제10조의4에 따라 원활한 아이돌보미의 관리 및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도지사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해 보호자,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충청북도교육청, 관계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임·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아이돌보미의 자격) ①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9., 2022. 12. 27.>

1.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교육
2. 아동의 안전관리 교육
3. 성희롱 예방 교육
4.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5.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교육
6.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5. 19.>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제3항에 따른 적성·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9.>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보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11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이하 “서비스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2011. 9. 15.>

②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충청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효율적인 충청북도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 일·가정 양립 및 양육 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비용 발생 요인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 아이돌봄 및 가족센터 등 종사자 처우 개선 경비

## 3. 관련조문 (안 제5조, 안 제6조)

-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제5조 1호)
-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사업(제5조 2호)
-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제5조 3호)
-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제5조 4호)
-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제6조)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지원사업) 및 안 6조(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에 의거 비용 추계

### 나. 추계 결과

- 2025년부터 향후 5년간 96,301백만원(국비 66,625, 도비 9,651, 시군비 20,025)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6. 작성자 :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043-220-3910)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b>세 출</b>	96,301,000	5,665,000	22,659,000	22,659,000	22,659,000	22,659,00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국비 70 : 도비 9 : 시군비 21)	93,815,000	5,519,000	22,074,000	22,073,983	22,074,000	22,074,000
아이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40 : 시군비 60)	138,000	8,000	32,500	32,400	32,500	32,500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국비 50 : 도비 50)	1,910,000	112,000	449,500	449,512	449,500	449,500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100%)	35,000	2,200	8,200	8,400	8,200	8,200
가족센터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도비 40 : 시군비 60)	403,000	23,800	94,800	94,800	94,800	94,800